

# 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12년 2월 07일

## 신한 BNPP 모넨텀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 제1호[주식혼합-파생형]

#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 - 1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
  -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 종류 C-i 수익증권
1.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 종류 C-i 수익증권
1.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<신설> 종류 C-i 수익증권 가입자격 : -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-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환매수수료 : 90일 미만 환매 시: 이익금의 70% 보수 :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70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2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45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15%
1.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	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	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 <신설> 종류 C-i 수익증권 가입자격 : -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-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환매수수료 : 90일 미만 환매 시: 이익금의 70%
1.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신설> 종류 C-i 수익증권 가입자격 : -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-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환매수수료 : 90일 미만 환매 시: 이익금의 70% 보수 :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70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2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45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15% < 기타 관련 정보 변경 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: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<신설> 2012. (. ) :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

간이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1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 종류 C-i 수익증권
1.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신설> 종류 C-i 수익증권 가입자격 : -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-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환매수수료 : 90일 미만 환매 시: 이익금의 70% 보수 :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70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2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45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15% < 기타 관련 정보 변경 >
1.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3부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	제3부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	제3부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<신설> 종류 C-i 수익증권 가입자격 : -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-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환매수수료 : 90일 미만 환매 시: 이익금의 70%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

항목	변경전	변경후
<p>1.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	<p>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                     &lt;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&gt;                      &lt; 생략 &gt;</p>	<p>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                     &lt;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&gt;                      &lt; 현행과 동일 &gt;                      - &lt; 신설 &gt; <b>종류 C-i 수익증권</b>  <u>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</u>                      -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~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-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</p>
<p>1.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	<p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                     ① &lt; 생략 &gt;                      1. ~ 6. &lt; 생략 &gt;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                     ①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1. ~ 6.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7. <b>종류 C-i 수익증권</b></p>
<p>1.종류 수익증권 신설(종류 C-i 수익증권) : 제39조 (보수)</p>	<p>제39조 (보수)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&lt; 생략 &gt;                      ③ &lt; 생략 &gt;                      1.~6. &lt; 생략 &gt;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제39조 (보수)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③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1.~6.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&lt; 신설 &gt; 7. <b>종류 C-i 수익증권</b>                     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 7.00 ]                     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 0.20 ]                     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 0.45 ]                    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 0.15 ]</p>